

2023년 「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」 사업 안내

1. 사업목적 :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

2. 사업내용

가. 사업기준일 : 2023. 6. 30.(주소지와 예술활동증명 기준일)

나. 사업규모 : 도내 27개 시·군 9,050명(수원, 용인, 고양, 성남 제외)

다. 지원대상 등

구 분	조건(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)	비고
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	<p>가. 2023.6.30.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·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(수원, 성남, 고양, 용인시 제외)</p> <p>나. 2023.6.30.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'예술활동증명서'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(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)</p> <p>다.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%수준 (월2,493,470원)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</p>	<p>※ 제외대상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세 미만자(2004.7.1.이후출생자) <p>※ 주민등록번호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(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) <p>※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(자격) 및 경기도 청년·농민·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- 단,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

* 예술활동증명 : 「예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, 예술을 업(業)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(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)

* 소득인정액 :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

라. 지원금액 : 1명당 연간150만원 / 2회 분할 지급(현금)

마. 지원시기 : (1차) 7월 ~ 8월 중, (2차) 10월 ~ 12월 중

바. 사업예산 : 13,200백만원(도비6,600, 시군비6,600) ※ 도비 50%, 시군비 50%

3. 신청절차

가. 접수기간 : 시군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시·군 홈페이지 확인 필요

- (안양시 등 10개 시군) 2023. 6. 30.(금) 09:00 ~ 2023. 8. 11.(금) 18:00

※ 단, 온라인 신청(경기민원24)은 2023.6.30.(금) 10:00부터 가능

안양시, 파주시, 군포시, 오산시, 안성시, 의왕시, 포천시, 여주시, 동두천시, 연천군

- (기타 시·군)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, 6주간 신청 접수

* 시·군 홈페이지 참조 및 해당 시·군에 문의

나. 제출방법 : 온라인(본인만 해당) 또는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
다. 접수처

- (온라인) 경기민원24(<https://gg24.gg.go.kr>)에 접속하여 신청(본인)

- (방문)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
라. 제출서류

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,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(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), 설문동의서(선택), 사회보장급여(자격)사실확인서 1부(대상자에 한함)

* (대리인)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, 방문자 신분증 지참

** (방문자 신분증)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제시

***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(www.kawfartist.kr)에서 발급 가능

4. 참고 및 유의사항

가.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,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,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나.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

- 정부·지방자치단체·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

다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(자격) 변동 여부 사전확인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

5. 지급절차

가. 「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」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(예술인→시·군)

나.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, 소득조사(시·군/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)

다.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[성범죄알림e(www.sexoffender.go.kr)]

라.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

* 신청일로부터 약1개월 내외 소요 예상, 변동 가능

마.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(시·군→예술인 / 2차에 걸쳐 분할 지급)

※ 신청 후 지급 전,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·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(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·군에 한함),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·군 문화예술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문의처(경기도 및 시·군별 담당자)

소속기관	부서	담당자 연락처
경기도	예술정책과	031-8008-4693
수원시	사업 미참여	-
용인시	사업 미참여	-
고양시	사업 미참여	-
성남시	사업 미참여	-
화성시	문화예술과	031-5189-6656
부천시	문화예술과	032-625-3111
남양주시	문화예술과	031-590-4777
안산시	문화예술과	031-481-2795
평택시	문화예술과	031-8024-3222
안양시	문화관광과	031-8045-5593
시흥시	문화예술과	031-310-6731
김포시	문화예술과	031-980-2477
파주시	문화예술과	031-940-8522
의정부시	문화예술과	031-828-4342
광주시	문화예술과	031-760-2104
광명시	문화관광과	02-2680-2160
하남시	문화정책과	031-790-6239
군포시	문화예술과	031-390-0724
오산시	문화예술과	031-8036-7613
양주시	문화관광과	031-8082-5653
이천시	문화예술과	031-645-3661
구리시	문화예술과	031-550-2550
안성시	문화체육관광과	031-678-2474
의왕시	문화관광과	031-345-2533
포천시	문화체육과	031-538-2783
양평군	문화체육과	031-770-2472
여주시	문화예술과	031-887-2834
동두천시	문화체육과	031-860-2063
과천시	문화체육과	02-3677-2065
가평군	문화체육과	031-580-2064
연천군	문화체육과	031-839-2062